

'99지방채발행변경계획(안) 검토보고서

1. 주요 법적근거

○ 지방재정법 제7조(세출의 재원)

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은 지방채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하여야 한다.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로 충당할 수 있다.

○ 지방재정법 제8조(지방채 발행) ① 지방채의 발행, 원금의 상환, 이자의 지불, 중권의 관한 사무절차 및 사무취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○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조의 2(지방채 발행대상등) ① 법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.

1. 공용, 공공용시설의 설치
2. 당해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상환이 가능한 사업
- 3~4항 생략
5. 기발행한 지방채의 차환
6. 기타 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업

○ 지방자치법 제115조(지방채무 및 채권관리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 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행정자치부 장관 승인을 얻는 범위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행정자치부 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입세출 예산외에 부담이 될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 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.
- ④~⑤항 생략

2. 검토의견

금번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'99 지방채 발행변경계획(안)은 이천시민들에게 맑은물을 공급하기 위한 이천상수도(2단계) 확장공사 및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 정수장 분담금의 부족재원을 충당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